

일 잘하는 비버엄마의 비범한 육아일기

6+6 부모육아휴직제 소개 편



일과 자녀의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휴직!

육아휴직제도는
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,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
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

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

생활비 걱정이 컸는데,
육아휴직급여 덕분에
아이와 함께하는 생활이
더 즐거워졌어요!

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
통상임금의 80%를 육아휴직급여로 1년간 지원합니다.

*월 상한액 150만 원, 하한액 70만 원

육아휴직급여 지원이 한층 더 커진, 엄마아빠가 함께하는 육아휴직!

<6+6 부모육아휴직제>는

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**맞벌이 부모 모두**
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**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**
통상임금의 100%로 각각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기간별 지급 상한액 (부모 각각)

1개월	200만 원	2개월	250만 원	3개월	300만 원
4개월	350만 원	5개월	400만 원	6개월	450만 원

지원대상

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근로자로
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.

부모가 함께 휴직할수록
급여 상한액도 높아지네요~



6+6 부모육아휴직제가 궁금해~



꼭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야만 하나요?

육아 형태에 따라 부모가 **동시에** 사용해도 되고,

품당품당 **번갈아서** 사용해도 됩니다.

또한 **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**됩니다.

[예시] 엄마 6개월 + 아빠 6개월

엄마 3개월 + 아빠 3개월 + 엄마 3개월 + 아빠 3개월



자녀가 2024년 이전에 출생했어도
'6+6 부모육아휴직제'를 사용할 수 있나요?

2024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여도 **육아휴직 개시 시점에**
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나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육아휴직제, 바로 신청하고 싶어요!



엄마! 아빠!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
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
꼭~ 신청하셔야 해요!

육아휴직 신청 시, **개시일 30일 전까지**

사업주에게 신청 후 **확인서**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
육아휴직급여는 **고용센터**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

더 궁금한 사항은
고용노동부 상담센터 ☎1350에서
확인해보세요!



더 다양한 일·육아 지원제도가 궁금하다면
홈페이지를 확인해비어!

고용24
<https://www.work24.go.kr>

고용노동부
<https://www.moel.go.kr>